SC제일은행

준법감시인 심의필 준법설명 23-274호 (2023.04.12) [유효기간 : 2023.05.08 ~ 2025.05.08]

SC제일 내월급통장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『금융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』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 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.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: SC제일 내월급통장
- 상품특징: 급여이체 실적 및 추가 조건에 따른 높은 수준의 우대이율, 다양한 수수료 면 제까지 제공하는 입출금예금 상품

2. 거래 조건

➢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구 분	내 용
가 입 대 상	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(1인 1계좌만 가입가능)
예 금 종 류	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(저축예금)
가 입 금 액	제한없음
약정이율 (연, 세전)	약정이율 (2025. 1. 2 현재) 적용금리 0.60% ※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, 변경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. ※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 적용

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이자지급시기에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해당되는 조건의 금리를 차등하여 적용합니다.

■ 우대이율 적용 기준 월

우대이율 항목	이자계산기준일(원가일)	해약 시
1, 2, 4, 5	전월	당월
3	전전월	전전월

① 은행 순 신규(첫 거래) 고객 우대이율		
우대이율	0.5%	
(연, 세전)	0.5%	
적용조건	은행 순 신규(첫 거래) 고객: 은행 최초 고객 신규일(주민등록	
	번호 최초 등록일) 기준 31일 이내 계좌 신규 고객	
적용기간	계좌 신규일로부터 1년 (계좌 신규일 -1일)	
	예시) 2023년 5월 2일 계좌 신규 시 2024년 5월 1일까지 적용	

우대 이율 (연, 세전)

② 급여이체 우대이율		
Ē	급여이체 금액	우대이율
기존거래고객이면	서 급여이체 1원 이상	0.2%
순 신규(첫 거래)	1원 이상 400만원 미만	0.5%
고객이면서	400만원 이상 650만원 미만	0.7%
급여이체	650만원 이상	1.0%
2. 급여이체 금액: 1 3. 급여의 정의 (1) 대량 급여이체(1 여이체방식을 통해 ☞ 대량이체가 아니는 이체 건은 적용! (2) 건별 급여이체(1 아래 ① 또는 ② 중 및 급여이체일 지정 ① 이체금액 70만원	월중 이체금액 합산금액 기준 101코드): 지로, 펌뱅킹, 공동망 입금된 급여 니거나, '급여'가 아닌 '일반' 코 되지 않음 103코드) : 1개 항목에 해당되어야 함(급 및 필수)	드로 입금되 여계좌 설정 나란에 "급여,
	기존거래고객이면 / 순 신규(첫 거래) 고객이면서 급여이체 1. 이 예금상품 계절 2. 급여이체 금액: 등 3. 급여의 정의 (1) 대량 급여이체(여이체방식을 통해 때 대량이체가 아니는 이체 건은 적용 등 (2) 건별 급여이체(이래 ① 또는 ② 중 및 급여이체일 지정 ① 이체금액 70만 등 (2) 인체금액 70만 등 (2) 전체고객 70만 등 (2)	급여이체 금액기존거래고객이면서 급여이체 1원 이상순 신규(첫 거래)1원 이상 400만원 미만고객이면서400만원 이상 650만원 미만급여이체650만원 이상1. 이 예금상품 계좌에 입금되는 급여이체에 한함2. 급여이체 금액: 월중 이체금액 합산금액 기준

	및 창구 단말로 급여이체 되는 경우.
	※ 단, 당행내 동일인 계좌 간 이체는 제외하며, 현금/대체 구
	분 없음
	② 이체금액 70만원 이상으로 「급여이체 지정일」을 지정하
	고, 급여이체 지정일 전·후 1영업일내에 급여이체 되는 경우
기타	1. 은행 순 신규(첫 거래) 고객: 계좌신규 월은 급여이체 여부
	에 관계없이 1.0%(연, 세전) 우대이율 적용
	2. 기존 거래 고객: 계좌신규 월은 급여이체 여부에 관계없이
	0.2%(연, 세전) 우대이율 적용

	③ 상품보유 고객 우대이율			
우대이율	■ 상품 종류 1개 이상 보유: 0.1%			
(연, 세전)	■ 상품 종류 3개 이상 보유: 0.2%			
대상	1. (원화)정기예금: 양도성예금증서, 표지어음 제외			
상품종류	2. 수익증권			
	3. 주택담보대출			
	4. 신용대출			
	5. 신용카드(BC, SC제일 현대)			
	☞ SC제일은행에 보유한 상품이어야 함			
	☞ 이자지급 기준일 현재 유효한 상품만 대상임			
	☞ 동일 상품종류의 상품을 여러 개 보유 시, 상품종류 별 1			
	개만 인정			
	(예시) 정기예금 2계좌 보유시 상품종류는 1개로 인정			
기타	모든 신규고객: 계좌 신규 월 및 다음 월은 조건없이 0.2%			
	(연, 세전) 우대이율 적용			

④ 거래고객 우대이율		
대상 거래	세부내용	우대이율
		(연, 세전)
이 예금상품 계좌에서 자동이체 1건 이상	1건 이상	0.1%
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		
1. 아파트 관리비, 공과금(GIRO 및		
KFTC)자동이체		
- 공과금 자동이체: 통신, 가스, 전기, 보험료		
등 거래 내용에 GIRO(통신, 가스 등으로		

표시되는 거래 역시 GIRO에 포함), KFTC, FBC,		
APT 로 표시되는 공과금 자동이체		
2. 월 10만원 이상 당행 적금 또는 월 10만원		
이상 당행 적립식 펀드로 자동이체		
BC(신용, 체크)카드/ SC 제일 현대 신용카드	월 이용금액	0.1%
보유 및 이용 실적	10만원 이상	
- SC 제일 삼성카드 제외	1. 이용금액	
	- 신용카드 :	
	청구금액 합산	
	- 체크카드 :	
	승인금액 합산	
	2. 수수료,	
	연회비 제외	
인터넷뱅킹/모바일뱅킹 로그인 실적	월 1회 이상	0.1%

⑤ 계좌 평균잔액 우대이율		
대상 거래	세부내용	우대이율
		(연, 세전)
이 예금상품 계좌의 전월 평균 잔액	50만원 이상	0.1%
※평균 잔액=해당 월 매일의 잔액을	100만원 이상	0.3%
합산한 금액/해당 월의 일 수	300만원 이상	0.5%

1. 이자 산출근거

- 매일의 이자 = 매일의 최종잔액 x 적용이율 / 365 (원 미만 절사)
- 매월 지급이자 = 매일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

이자 산출근거 및

2. 이자 지급시기

이자 지급시기

● 매월 첫 영업일(예금 신규시는 예금신규일)부터 매월 말일 (단, 말일이 금융휴무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연속되는 휴일의 마지막 날)까지 일별로 이자계산하여 합산된 이자금액을 매월 첫 영업일에 원금에 더함

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
- 계좌에 (가)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 -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	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•출금•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● 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				
	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				
	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				
연계 제휴	해당사항 없음				
서비스 내용					
	● 편입 기준 : 출금거래 제한 ✓ 최종거래일로부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당좌예금계좌 및 가계 당좌예금계좌				
휴면계좌 편입	✓ 최종거래일로부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● 편입시기 : 매월 1회				
	● 거래재개 : 본인확인서류 준비 및 영업점 방문				
거래중지계좌 편입	 ● 편입기준: 입금 및 출금거래 제한 ✔ 예금잔액이 10,000원 미만이며,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✔ 예금잔액이 10,000원 이상 50,000원 미만이며,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✔ 예금잔액이 50,000원 이상 100,000원 미만이며,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✔ '지속적인 고객확인'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 기한이 150일 초과한 고객이 대면/비대면거래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거래중지계좌에 편입한다. (단, 모든 입금거래는 허용한다) ● 편입시기: 연 2회 (매년 5월과 11월) ● 거래재개: 본인확인서류, 금융거래목적확인서, 증빙자료 준비 및 영업점방문 				
휴면예금 및 출연	 ●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"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●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. 				
부 가 혜 택	● 수수료 면제서비스: 이 예금에서 연동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한 함 1. 개인 인터넷뱅킹(개인 모바일뱅킹 포함) 및 텔레뱅킹 이체 수수료 2. 영업시간 외 당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3.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: 월 10회까지 면제 4.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(CD/ATM) 출금수수료(시간외, 공휴일 포				

	1					
	함) ☞ 타행제휴CD기, VAN사 CD기 제외 (※ 3호 및 4호의 타행의 범위 : 시중은행, 특수은행, 지방은행, HSBC, 우체국, 농협(중앙회 및 단위농협), 수협, 상호저축은행, 새마을금고 등					
			여하는 금융회사)			
		행자동이체				
	J. – ₁	6/16 YM	1 1 44			
거래방법		영업점, 모바				
		영업점, 인터	넷뱅킹, 모바일뱅킹			
양도	불가					
질권설정	불가	T				
			합저축 가입 가능 (모든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)			
			종합저축 가입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특약 제2조 참조			
		"	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			
세제혜택	가능 	가능 있음				
		☞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은 영업점에서만 신규할 수 있음				
			좌로 신규한 후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전환하거나, 비과			
F TLHL☆!	a E TLHL		으로 신규한 후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없음			
통장발행	● 통장발 *		이 에그의 에그지나중밤에 띠기 이그기 소전이 이지			
예금자보호		H당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			
여부		^{보험공사} 금융상품	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 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
41		l고 5천만원	(움과 옵션) 모오립니다.			
	● 별도 부	대비용 없음				
부대비용	● 일반적	인 수수료는	예금거래기본약관 제19조에 의거 영업점 및 인터넷 홈			
	페이지	에 게시한 수	수료표에 따릅니다.			
	● 금융회/	나가 금융소 ^년	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 이내에 소비자			
위법계약	가 계약	ᅣ해지를 요구	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			
통지해야 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· 해지권			설 시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			
711·11 E	● 위법계약	약해지 요구	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			
	부터 1년	크 이내에 가	능합니다.(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)			
	●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 으로					
자료열람	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프					
요구권		할 수 있습니				
	- 계약	제결(이행)어	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			

	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
	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	●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
	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.
	●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(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
	우)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기기계상	● 이 예금은 명의변경 및 양도할 수 없습니다.
거래제한	● 이 예금은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.

3. 유의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금융상품을 가입(계약)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이 금융상품을 가입(계약)하시는 경우 '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'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이 상품은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컨택센터(1588-1599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standardchartered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어	내용
압류	●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
	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
	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●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
	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●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
	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

PUBLIC

	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
	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금, 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	●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
	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
출연	말합니다.
	●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
	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경과기간	●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
	● (예시) 입금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